

#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비교연구

이동규

2015. 11

본 보고서는 CRS의 내용을 FATCA와의 비교를 통해 요약·정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OECD에서 발행한 CRS 원문 및 주석서와 CRS 핸드북을 번역하여 발췌요약하거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특히,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번역한 해당 원문들의 내용이 상당부분 인용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번역의 결과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MCAA) 및 공통보고기준(CRS)과 이에 대한 OECD의 참고자료들에 대한 번역서’로 별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번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서론 .....	1
II. CRS와 FATCA의 개괄 .....	3
1.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	3
2. 공통보고기준(CRS) .....	5
III. 공통보고기준(CRS)의 주요 내용 .....	7
1. CRS의 기본구조 .....	7
가. 보고 금융기관(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 .....	8
나.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	11
다. 보고대상 계좌(Reportable Accounts) .....	12
라. 실사 절차(Due Diligence) .....	13
마. 보고대상 정보(the Relevant Information) .....	16
2. CRS와 FATCA의 비교 .....	20
가. 보고 금융기관 .....	20
나. 금융계좌 .....	22
다. 보고대상 계좌 .....	24
라. 실사 절차 .....	26
마. 보고대상 정보 .....	29
IV. 결론 .....	32
참고문헌 .....	34

## 표목차

〈표 III-1〉 공통보고기준(CRS)의 주요 내용 요약 .....	8
〈표 III-2〉 금융계좌의 종류 .....	11
〈표 III-3〉 금융계좌별 관리주체로 간주되는 기관 .....	12
〈표 III-4〉 식별정보의 주요 내용 .....	17
〈표 III-5〉 계좌정보의 주요 내용 .....	18
〈표 III-6〉 금융정보의 주요 내용 .....	18
〈표 III-7〉 CRS와 FATCA 협정 비교 .....	31

## 그림목차

[그림 III-1] CRS의 기본 구조 .....	7
[그림 III-2] 보고 금융기관 식별을 위한 Test 단계 .....	9
[그림 III-3] 보고대상 계좌 판별을 위한 Test 단계 .....	13
[그림 III-4] CRS 실사 절차(Due Diligence Procedure): 개인 .....	14
[그림 III-5] CRS 실사 절차(Due Diligence Procedure): 단체 .....	15

## I 서론

- 금융거래의 발달로 국제적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역외탈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OECD는 1998년 4월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해한 조세경쟁과 관련된 보완조치를 포괄적으로 발표함
  - 이후, 2000년 6월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Progress o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에서 구체적으로 유해한 세제와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및 지역을 발표함
  - 2001년에는 효과적인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OECD 글로벌 포럼(OECD Global Forum Working Group on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을 설치하여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함
    - 동 포럼은 2009년에 「투명성과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으로 개칭됨
  
- Global Forum의 논의 결과, 2012년부터 국가간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2013년 4월 19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자동정보교환을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
  - 2013년 6월 19일, G8 정상회의에서 자동정보교환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OECD의 보고서를 추인함<sup>1)</sup>
  - 2013년 9월 6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자동정보교환을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인정하고, 2014년 2월까지 단일화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OECD에 요청함
  
- 이에 따라, 2014년 2월 23일 G20 재무장관들이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통과시킴<sup>2)</sup>

1) [http://www.oecd.org/ctp/exchange-of-tax-information/taxtransparency\\_G8report.pdf](http://www.oecd.org/ctp/exchange-of-tax-information/taxtransparency_G8report.pdf), 2015. 8. 18.

- 동년 5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연례각료이사회(Annual Ministerial Council Meeting)는 과세 관련 정보의 자동교환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을 발표함<sup>3)</sup>
  -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 34개국 및 기타 국가들이 이를 채택함
- 또한 OECD는 2014년 7월 21일에 자동정보교환의 국제기준(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의 최종본을 발표함<sup>4)</sup>
- 동 보고서에서는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세한 계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대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도록 함
  - 2014년 7월 15일, OECD 이사회(council)에서 동 표준은 승인되었고, 이는 9월 20~21일 호주 케언즈(Cairns)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공식 상정됨
-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OECD는 자동정보교환의 실효성을 증진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 본 보고서는 조세정보자동교환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공통보고기준(CRS)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그 내용을 비교함
- 본고의 제 II 장에서는 CRS와 FATCA에 대해 개괄하여 설명함
  - 제 III 장은 CRS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기술함
  - 제 IV 장에서는 CRS와 미국의 FATCA를 비교함으로써 CRS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2) <http://www.oecd.org/ctp/exchange-of-tax-information/automatic-exchange-financial-account-information-common-reporting-standard.pdf>, 2015. 8. 18.

3) "Declaration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Adopted on 6 May 2014,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4) OECD(2014)가 자동정보교환의 국제기준 최종본임

## II CRS와 FATCA의 개괄

### 1.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 1980년대 이후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자들의 다양한 해외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짐
  -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자발적인 납세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됨
  
- 특히,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만성 재정적자를 경험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함
  - 2010년 3월,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미국 내국세법에 신설함<sup>5)</sup>
    - FATCA는 다음 과정을 거쳐 재정·시행됨<sup>6)</sup>
      - 2010년 3월 18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률로 제정됨(고용회복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창출법(The Hiring Incentive to Restore Employment Act of 2010: HIRE)’의 Chapter 4)
      - 2013년 1월 17일: 최종시행규정(Final Regulation)이 발표됨
      - 2014년 7월 1일: FATCA 시행됨
    - 해외금융기관들이 자기 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고 미국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특정 실사 절차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미국 내 소득에 대해 소득의 30% 세율을 원청징수함
  
- 그러나 해외금융기관이 고객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자국의 내국법과 상치하여 이행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FATCA는 미국 내국세법의 법령이기에 타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국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5) 기획재정부(2015. 6. 10 보도자료)

6) 홍범교(2014) p.58 정리 인용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타국과 ‘국가간 협약’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FATCA를 시행하고 있음
    - 국가간 협약을 통해, 협약 대상국의 금융기관은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자신의 과세당국에 보고(IGA Model 1) 할 수도 있고, 동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IGA Model 2)하는 것도 가능함
  - 많은 관할권들은 정부간 기반에 의한 FATCA에 근거하여 보고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도 2014년 3월에 미국과 「한-미간 FATCA 시행을 위한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였음
- FATCA와 유사하게 국가간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제도로는 OECD 국제기준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등을 들 수 있음
- 이는 다자간 국제표준으로서, 매년 참여국들이 자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집한 금융계좌정보를 다른 참여국들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임
  - OECD 회원국들은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를 막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2009년부터 OECD 국제기준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국가간 자본이동 및 거래가 더 용이해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조세회피를 하고자 상당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별로 과세권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OECD는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국제기준을 2014년 7월에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발표함
  - 2014년 7월, OECD는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준의 최종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상세한 계좌 정보를 참여국들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임
    - OECD 국제기준은 과세당국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집한 보고대상 계좌의 상세정보를 다른 참여국들과 정기적으로 교환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요건 등을 정리하고 있음

## 2. 공통보고기준(CRS)

- CRS는 OECD가 G20 국가들과 함께 자동정보교환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제정한 표준화된 자동교환모델임
  - CRS는 FATCA와의 일관성을 높여, 두 제도 이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FATCA와 유사하게 설계됨
  - CRS는 2013년 10월 최종안이 마련되고, 2014년 1월 OECD 재정위원회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에서 승인되었으며, 그 주석서는 같은해 6월 CFA에서 승인
  - 협정 서명국은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됨
  - FATCA 협정체결로 미국과의 정보교환은 시행되나,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OECD가 추진하는 국제기준에 참여해야 함
  
- 대량의 정보를 국가간 교환하는 것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예를 들어, 미국의 FATCA가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비용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된 바 있음
  - 많은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 협정 시행에 따른 비용을 일반적 비용과 특수한 비용을 구분함
  - 일반적 비용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비용을 의미하며, 특수한 비용은 정보요청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번역·통역비용이나 해당 납세자에게 정보요청을 받은 국가가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 등을 일컫음
  - 각 협정에서 일반적 비용은 정보를 요청 받은 국가가, 특수한 비용은 정보 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CRS의 조기 이행그룹(Early Adopters Group: EAG)으로서 2017년부터 정보교환을 이행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함
  - 2013년 4월 9일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 등 5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미국과의 FATCA 이행을 위한 국가간 협약(FATCA IGA)을 마무리하면서 5개국 간에 상호 정보교환을 하기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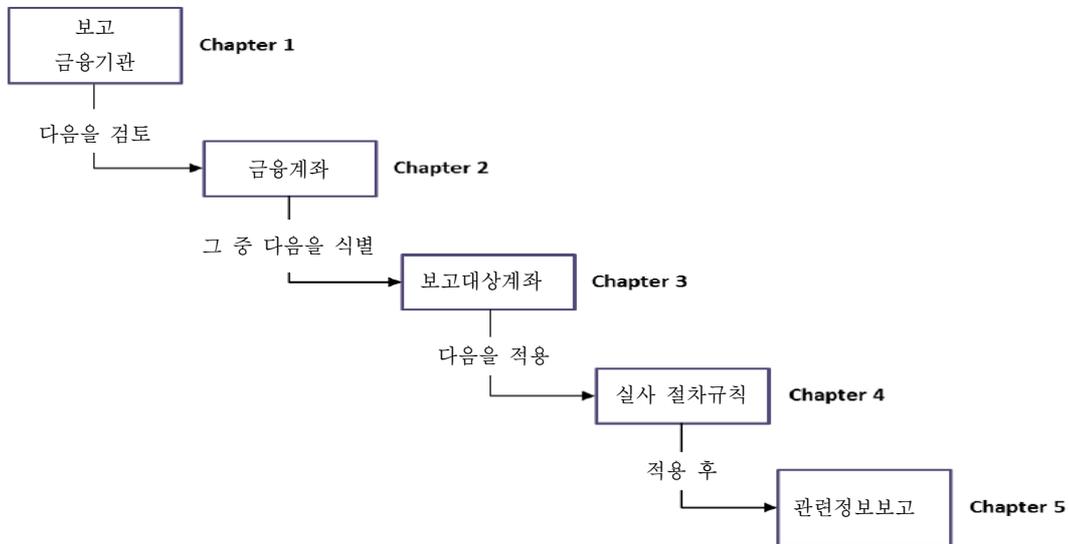
- EAG는 이들 5개국의 취지에 공감하여 OECD의 CRS를 조기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국가들로, 영국의 주도하에 2014년 3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20~21일에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2017년 정보교환 이행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EAG에 자동 참여하게 됨
- EAG는 2017년 정보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됨
- 2015년 말까지 개설되어 있는 계좌는 기존계좌로, 2016년 초부터 개설하는 계좌는 신규계좌로 분류함
    -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예금주의 세법상 거주지(tax residence)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준비는 사전에 완료해야 함
  - 1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절차는 2016년 말까지 완료해야 함
  - 100만달러 이하의 소액 기존 개인계좌 및 법인계좌에 대한 실사 절차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하고, 최초의 정보교환은 2017년 9월 실시할 예정임
  - 신규계좌 및 고액의 기존 개인 계좌에 대한 최초의 정보 교환은 2017년 9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임

Ⅲ 공통보고기준(CRS)의 주요 내용 7)

1. CRS의 기본구조

- CRS는 금융기관이 매년 과세당국간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규칙 및 절차를 다룸
  - CRS의 기본 구조는 [그림 Ⅲ-1]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실사와 보고절차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함

[그림 Ⅲ-1] CRS의 기본 구조



자료: OECD(2015), p. 34

- CRS는 금융정보 수집 주체 및 보고 대상, 관련 실사 절차 등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고 있음
  - 제1절(일반 보고 의무사항), 제2~7절(고객실사), 제8절(용어의 정의), 제9절(효과적인 이행) 등 총 9개의 절로 구성됨

① 제1절: 일반 보고 의무사항(General Reporting Requirement)

- 보고대상 금융기관: 수탁기관(Custodial Institution),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 투자단체, 특정보험회사 등 포함

7) 본 장은 CRS 및 그 주석(OECD(2014))과 CRS 이행 핸드북(OECD(2015))을 요약·정리하여 인용함

- 금융정보: 이자, 배당, 계좌잔액, 보험상품을 통한 소득, 금융자산 판매수익 등
  - 보고대상 계좌: 개인·단체가 보유한 계좌, 보고대상 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단체(Passive Entities)가 보유한 계좌
- ② 제2절~제7절: 고객실사(Due Diligence)
- 개인계좌(기존/신규) 및 신규 단체계좌는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대상(no threshold)이나, 기존 단체계좌는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고함
- ③ 제8절: 용어의 정의(Defined Terms)
- 보고대상 금융기관, 보고대상계좌 등 각종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
- ④ 제9절: 효과적인 이행(Effective Implementation)
- 보고 및 실사절차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마련해야 할 행정적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함

〈표 III-1〉 공통보고기준(CRS)의 주요 내용 요약

보고대상 계좌	개인	• 모든 계좌
	법인	• (기존계좌)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 (신규계좌) 모든 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보고대상 금융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 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금융계좌 소유자 식별	•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감인하여 식별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 가. 보고 금융기관(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

-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할 금융기관은 [그림 III-2]와 같은 4단계 테스트를 적용하여 규정함

[그림 Ⅲ-2] 보고 금융기관 식별을 위한 Test 단계



자료: OECD(2015), p. 35

- 보고대상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넓은 의미의 회사, 조합, 신탁 및 재단과 같은 법인 또는 법적 단체만이 보고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기업을 포함한 개인들은 보고 금융기관에서 제외됨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체로 식별되었더라도 참여관할권의 단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관할권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참여관할권 내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단체, 관할권 내에 소재한 위 단체의 지점, 관할권 내에 소재한 외국단체의 지점을 관할권의 보고에 있어서 연결점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반면, 외국단체와 외국단체의 외국 지점 및 국내단체의 외국 지점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표준에 따른 단체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조세목적에 따른 거주지에 의해 분류됨
  - 그러나 신탁이 아닌 단체에 대해 재정적으로 투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할권에 위치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조세목적상 거주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단체는 법에 의해 설립된 곳, 또는 금융 감독을 받는 관할권 내의 거주자로 취급됨
  - 또한, 신탁이 아닌 단체가 둘 이상의 참여관할권 거주자가 되는 경우, 보고되는 금융계좌는 각 관할권의 과세당국에 보고될 것이 요구됨
  - 신탁의 경우, 신탁이 다른 참여관할권의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어 당해 신탁에 관한 보고가 요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다른 참여관할권의 과세당국에 보고되는 경우가 아닌 한, 1인 이상의 수탁자가 거주하는 참여관할권 내의 보고 목적에 따른 거주지에 의해 분류됨

□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은행업 또는 그와 유사한 예금을 수탁하는 법인
- 수탁기관(Custodial Institutions): 다른 이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한 법인
- 투자단체(Investment Entities): 단기 금융시장 상품거래, 포트폴리오 관리, 자금의 투자운용 또는 관리 등의 활동을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법인
- 특정보험회사(Specified Insurance Companies):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인 단체

□ 다음과 같은 특정한 금융기관은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보보고의 요구로부터 제외되는 비보고 금융기관(Non-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규정됨

- 정부단체 및 정부의 연금펀드
- 국제기구
- 중앙은행

- 특정 퇴직펀드
- 적격신용카드 발행인
- 면제 집합투자기구
-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
- 기타 저위험 금융기관
  - 외국 납세의무자가 탈세를 위해 사용될 위험이 적은 기관을 포함하여 비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나.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 보고 금융기관은 과세당국에 보고할 계좌를 확정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금융계좌를 검토해야 함
  - CRS는 조세회피의 위험이 낮은 금융계좌 유형을 구체화하여, 검토 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또한, 보고대상 금융계좌를 확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적용함

**〈표 Ⅲ-2〉 금융계좌의 종류**

종 류	개 요
예금계좌	• 금융기관이 은행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 과정에서 유지하는 예금·적금·부금 등의 계좌
수탁계좌	• 하나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다른 인의 이익을 위한 계좌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은 제외)
자본 및 채무 지분	• 금융기관에 의해 보유되는 금융기관 소유의 자본 및 채무 지분 그리고 그와 동등한 조합 및 신탁의 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	• 사망, 질병, 사고, 법적 책임, 현금성 자산위험에 대한 보험계약 및 기대여명에 의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계약

자료: OECD(2015), p. 42, Figure 8의 일부를 다시 정리함.

- 일반적으로 금융계좌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유되는 계좌이어야 함
  - CRS는 금융계좌를 예금계좌, 수탁계좌, 자본 및 채무 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음
  - 〈표 Ⅲ-3〉은 각 형태의 금융계좌에 대해 관리할 것으로 간주되는 금융기관을 정리함

〈표 III-3〉 금융계좌별 관리주체로 간주되는 기관

구 분	일반적으로 계좌를 관리할 것으로 간주되는 금융기관
예금계좌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대리인 제외)
수탁계좌	해당 계좌 내의 자산에 대하여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자본 및 채무 지분	금융기관의 자본 또는 채무 지분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현금가치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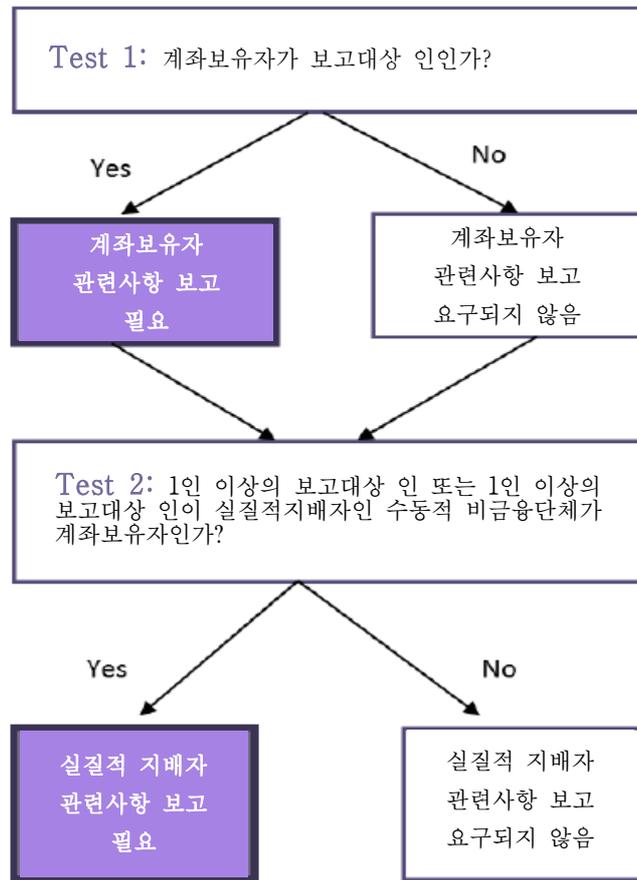
자료: OECD(2015), p. 40

- 관할권은 다양한 법적, 행정적 또는 운영체제를 가진 다른 금융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서 계좌를 보유한다는 것의 의미도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음
  - 보고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에 관한 보고대상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예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시함

#### 다. 보고대상 계좌(Reportable Accounts)

- 보고대상 계좌로 확정되면, 보고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함
  - 보고대상 계좌는 1인 이상의 보고대상 인 또는 1인 이상의 보고대상 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에 의해 보유되는 계좌로, 두 가지 형태의 보고대상 계좌가 존재함
- 계좌보유자에 따른 보고대상 계좌인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로 인한 보고대상 계좌가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테스트에 의해 결정함

[그림 Ⅲ-3] 보고대상 계좌 판별을 위한 Test 단계



자료: OECD(2015),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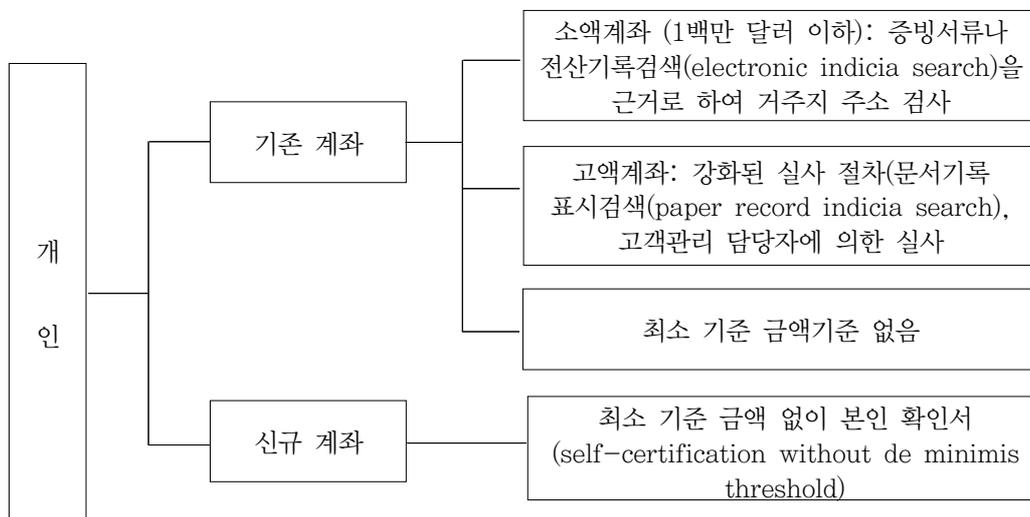
## 라. 실사 절차(Due Diligence)

### 1) 개인계좌

- 실사 절차는 기존 계좌인지 신규계좌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계좌 보유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그림 Ⅲ-4]와 [그림 Ⅲ-5]와 같이 서로 다른 실사 절차가 적용됨
  - 신규계좌의 개설 시점을 언제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실사 절차 규칙이 다름
  - 일정 시점 이후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그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목적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자에게 필요한 추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개인 신규계좌를 개설한 자는 그 개인이 조세목적상 거주자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성명, 거주지 주소, 납세자번호 및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본인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만일 본인확인서에 의해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관할권의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결정된다면, 보고 금융기관은 그 계좌를 보고대상 계좌로 취급하여야 함
- 그리고 위 시점 이전에 개설된 기존 계좌인 경우에,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처리하게 됨
  - 기존 계좌 중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1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소액계좌로 분류하여, 관할권이 보고 금융기관에게 전산기록 검색 대신 거주지 주소 검사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거나 강제할 수 있음
  - 거주지 주소 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고 금융기관이 증빙서류(대부분 정부가 발급한 문서로 구성됨)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록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좌보유자는 그러한 주소가 있는 관할권의 거주자로 취급됨
  - 만약 거주지 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전산기록 검색을 수행해야 함
- 반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고액계좌의 경우에는 고객관리 담당자에 의한 실사가 추가됨

[그림 III-4] CRS 실사 절차(Due Diligence Procedure):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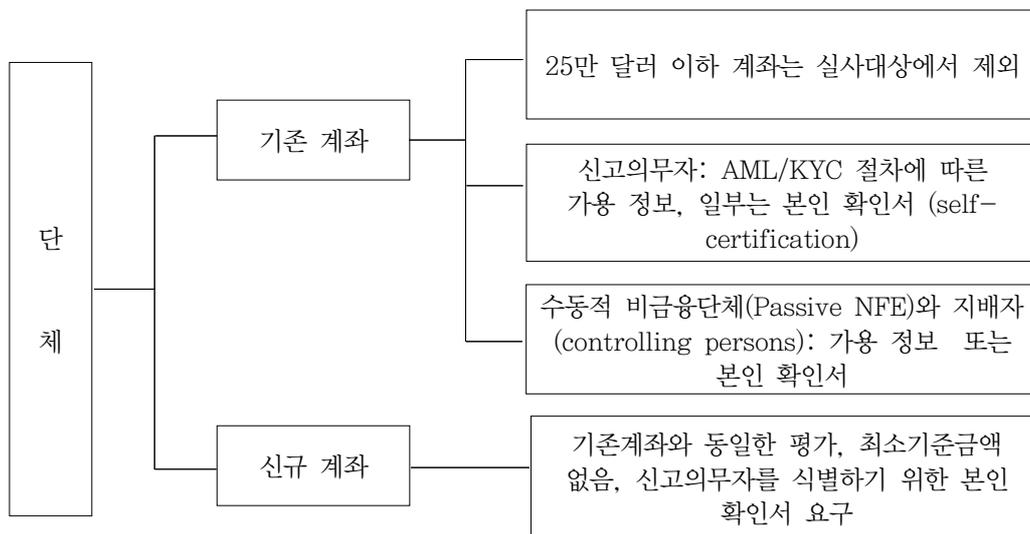


자료: 흥범교(2014), p. 55 일부 수정하여 재인영, 원자료: 영국 HM treasury

2) 단체계좌

- 신규 및 기존 단체계좌에 대한 실사는 다음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
  - 첫째, 보고 금융기관은 단체가 보고대상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그렇다면 해당 계좌는 보고대상 계좌임
  - 둘째, 특정한 단체인 계좌보유자(수동적 비금융단체)의 경우, 보고 금융기관은 단체가 보고대상 인에 의하여 지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합계 후)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사 대상에 포함됨
  - 단체인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1백만 달러 이하인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집 및 획득한 정보에 근거한 실사로 같음함
    - 상대적으로 실사 진행과정의 엄격성이 약함
  - 반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배자에 관한 본인확인서가 (계좌보유자나 실질적 지배자로부터) 수집되어야 함
    - 본인확인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배자나 단체인 계좌보유자의 서명과 날짜가 기입되어 있으며, 각 실질적 지배자의 이름, 주소, 조세목적상 관할권 내의 거주지, 납세자번호 및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

[그림 III-5] CRS 실사 절차(Due Diligence Procedure): 단체



자료: 흥범교(2014), p. 55 재인용, 원자료: 영국 HM Treasury

#### 마. 보고대상 정보(the Relevant Information)

- 보고대상 계좌로 결정되면, 보고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도록 규정
  - ① 식별정보: 자동교환 협력 관할권이 관련된 계좌보유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
  - ② 계좌정보: 계좌 및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③ 금융정보: 계좌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계좌 잔액과 관련된 정보

##### 1) 식별정보

- 보고대상인 개인 및 단체 계좌보유자, 보고대상 인인 실질지배자가 있는 단체 및 그 실질지배자의 경우
  - 이름
  - 주소는 실사 절차에 따른 계좌보유자의 주소 기록을 의미함
    - 개인의 경우 현 거주지 주소이며, 현 거주지 주소가 없을 경우 우편물 주소를 사용함
  - 거주관할권은 기존계좌의 경우 거주성 테스트 또는 추정정보 검색을 기초로, 신규계좌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를 기초로 함
  -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TIN)란 그 계좌 보유자의 거주 관할권에서 그 계좌보유자에게 부여한 번호를 의미함
    - 보고 금융기관의 기록상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법상 보고 금융기관이 납세자 번호를 수집하도록 달리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계좌의 납세자 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보고 금융기관은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개인/실질지배자와 관련해서만 보고되어야 하는 추가 정보
  - 출생일: 만약 출생일이 보고 금융기관의 기록에 존재하지 않고 국내법상 보고 금융기관이 출생일 정보를 수집하도록 달리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출생일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단, 보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출생지: 금융기관이 국내법상 출생지 정보를 획득하여 보고하도록 달리 요구되거나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에서 출생지 정보를 이용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계좌 및 신규계좌 모두와 관련하여 출생지 정보를 보고할 의무는 없음

〈표 Ⅲ-3〉 식별정보의 주요 내용

보고대상 인, 보고대상 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 단체 및 그 자신이 실질적 지배자인 개인 및 단체 계좌보유자와 관련하여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정보	추가 설명 (해당되는 경우)
이름	
주소	• 실사 절차에 따라 보고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에 대하여 기록한 주소, 개인에 관하여는 현재 거주지 주소 (또는 현재 거주지 주소가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우편주소)
거주지관할권	• 기존계좌의 경우 거주자 테스트 또는 추정정보에 근거하고, 신규계좌의 경우 본인확인서에 근거한다.
납세자번호	• 계좌와 관련하여 보고되어야 하는 납세자번호는 거주관할권(즉 원천관할권이 아닌)에 의해 계좌보유자에게 주어진 납세자번호이다. • 기존계좌에 대하여 (i) 납세자번호가 보고 금융기관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ii) 국내법에 의하여 보고 금융기관이 수집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번호는 보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해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전제로 함).

개인 / 실질적 지배자와 관련하여서만 보고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

정보	추가 설명 (해당되는 경우)
생년월일	• 기존계좌에 대하여 (i) 생년월일이 보고 금융기관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ii) 국내법에 의하여 보고 금융기관이 수집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은 보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해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전제로 함).
출생지	• 기존계좌 및 신규계좌 모두에 대하여 국내법상 보고 금융기관이 출생지에 관한 자료를 획득 및 보고할 의무가 있으면서 보고 금융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전산검색이 가능한 자료상의 출생지 정보를 이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출생지는 보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료: OECD(2015), pp. 72-73

## 2) 계좌정보

### □ 모든 보고대상 계좌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

- 계좌번호: 계좌의 식별번호, 만약 그러한 번호가 해당계좌에 할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유한 일련번호, 계약번호나 약관 번호, 또는 기타 번호 등과 같이 계좌번호와 유사한 기능적 등가물

- 보고 금융기관의 이름과 기관 식별번호(있을 경우): 보고 금융기관은 그의 기관명과 식별번호(있을 경우)를 반드시 보고하여 참여관할권이 향후 교환할 정보의 원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III-5〉 계좌정보의 주요 내용

모든 보고대상 계좌에 관하여 요구되는 정보	
정보	추가 설명 (해당되는 경우)
계좌번호(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	• 계좌의 식별번호 또는 계좌에 이러한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즉, 고유한 일련번호, 계약 또는 정책 번호, 또는 기타 번호)
보고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있는 경우)	• 보고 금융기관은 참여관할권이 보고 및 교환된 정보의 출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 및 식별번호(있는 경우)를 보고해야 한다.

자료: OECD(2015), p. 73

3) 금융정보

□ 모든 보고대상 계좌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

- 계좌 잔액 또는 가액(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현금가치 또는 해약 환급금) 또는 만약 해당 보고기간 동안 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 계좌의 폐쇄 사실

〈표 III-6〉 금융정보의 주요 내용

모든 보고대상 계좌에 관하여 요구되는 정보	
정보	추가 설명 (해당되는 경우)
계좌 잔액 또는 가액(현금가치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의 경우 그 현금가치 또는 환대가액 포함), 또는 계좌가 해당 보고 기간에 해지된 경우 해당 계좌의 해지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0이라고 보고해야 한다.</li> <li>• 일반적으로,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은 계좌보유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계산한 잔액 또는 가액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의 경우, 자본지분의 잔액 또는 가액은 가장 빈번한 가치평가의 요구를 위해 금융기관에 의해 계산된 가액이고, 채무지분의 잔액 또는 가액은 그것의 원금이다.</li> <li>• 계좌가 해지된 경우, 보고 금융기관은 계좌가 해지된 사실만을 보고하면 된다 (즉, 잔액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li> <li>• 이미 금융기관에 계좌의 평균 잔액 또는 가액의 보고를 요구하는 관할권의 경우, 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의 보고를 요구하는 대신 자유롭게 기존에 요청한 평균 잔액 또는 가액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 보고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옵션은 해당 정보가 FATCA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가장 가치가 있을 것이다.</li> </ul>

예금계좌에 관하여만 요구되는 정보	
해당 계좌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이자 총액	
수탁계좌에 관하여만 요구되는 정보	
해당 계좌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이자 총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배당 총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해당 계좌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 ‘그 밖의 소득’이라는 용어는 해당 계좌가 보유된 관할권의 법에 의해 간주되는 소득으로 금융자산의 매매 또는 상환으로 인한 이자, 배당금, 또는 총 거래가액 또는 자본이득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해당 계좌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자산의 매매 또는 상환으로부터 발생한 총 거래가액	• ‘매매 또는 상환’이라는 용어는 금융자산의 매매 또는 상환을 의미한다.
기타 계좌에 관하여만 요구되는 정보(즉 예금 또는 수탁계좌 외의 계좌)	
보고 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	• 예를 들어, ‘총금액’은 다음 액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계좌보유자에 대하여 지급된 상환금(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및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따라 계좌보유자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이와 같은 지급이 현금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료: OECD(2015), pp. 73-75

- 예금계좌와 관련해서만 요구되는 정보
  - 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이자 총액
  
- 수탁계좌와 관련해서만 요구되는 정보
  - 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이자와 배당의 총액
  - 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기타 소득총액
  - 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금융자산의 판매 또는 상환으로부터 발생된 총거래가액
  
- 그 밖의 계좌와 관련해서만 요구되는 정보
  - 보고 금융기관이 채무자로 된 것과 관련 있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금액 총액

## 2. CRS와 FATCA의 비교<sup>8)</sup>

- OECD의 CRS와 미국의 FATCA 협정은 모두 역외탈세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정보교환 모델임
  - FATCA는 미국 맞춤형 모델로 이미 다수의 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CRS는 FATCA 모델에서 미국적인 특징을 배제한, 보다 보편적인 후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CRS를 시행하는 많은 관할권이 FATCA도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CRS는 FATCA와의 일관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차이도 존재함
    -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 특정된 내용이 없거나 또는 양자간의 FATCA 협정에서 적용되는 특정 조항들이 다자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CRS의 다자간 관점으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FATCA 정부간 협정(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상의 정부 및 금융기관은 CRS의 요건과 그들의 FATCA 요건을 대체로 조정할 수 있음
-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기준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국제적인 표준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역외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절에서는 CRS와 이미 실행되고 있는 FATCA 협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CRS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가. 보고 금융기관

- CRS와 대부분의 FATCA 협력국은 금융기관의 거주지를 ‘보고 접점(reporting nexus)’으로 이용함
  - 그러나 FATCA 협정은 FATCA 협력국에서 거주지 또는 금융기관이 조직된 관할권 중 하나의 요건을 이용하여 보고 금융기관을 정의할 수 있도록

8) FATCA IGA는 정보교환방식에 따라 Model 1과 Model 2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는 과세당국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Model 1을 기준으로 비교함

허용함<sup>9)</sup>

- FATCA 협정은 보통 FATCA 협정체결국의 내국세법상의 적절한 개념에 기초하여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명시
  - 내국세법상 그러한 개념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조직 테스트(legal organisation test)를 통하여 결정됨
  
- FATCA 협정에서 규정하는 투자단체의 정의는 CRS와 다름
  - 그러나 FATCA 협정과 CRS에서 투자단체의 정의는 표현이 서로 다를지언정 CRS가 FATCA 협정과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고안되었음
  - 따라서 관할권은 CRS와 FATCA 협정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CRS의 접근에 의존할 수 있음
  
- FATCA 협정은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즉, FATCA 규정상 보고 및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단체) 및 FATCA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융기관을 비보고 금융기관으로 취급함
  - 그러나 CRS에서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및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과 같은 하위범주는 사용되지 않음
  -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및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의 지위는 FATCA에 특정된 것이며, 비보고 금융기관만을 규정하는 CRS의 맥락에서는 필요하지 않음
  
- FATCA 협정에서는 비보고 금융기관의 범주를 양자간 논의를 거쳐 합의로 정하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자간 환경에는 맞지 않음
  - 반면, CRS는 몇몇 포괄적인 범주들을 포함하고, 관할권들이 조세회피에 이용될 위험이 낮은 기타 금융기관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
  - CRS의 비보고 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된 기관과 FATCA 보고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간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CRS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짐
  
- FATCA 협정은 CRS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비보고 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있음

9) 몇몇 Model 1 FATCA IGA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이용함

- 조세조약상 적격 퇴직펀드
  -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투자단체
  - 지역은행 - 지역고객기반 금융기관
  - 소액계좌 금융기관
  - 피후원 투자단체 및 피지배 외국법인
  -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운용업자
  - 이외에도 미국 FATCA 시행령에 의거하여 더 많은 범주의 단체들이 FATCA 협정 부속서 II 에서 비보고 금융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
- CRS에서 비보고 금융기관의 범주에 조세조약상 적격 퇴직펀드,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투자단체, 소액계좌 금융기관, 피후원 투자단체 및 피지배 외국법인 등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조세조약상 적격 퇴직펀드와 지역은행 및 지역고객기반 금융기관들은 다자간 환경에는 맞지 않음
  - 그리고 소액계좌 금융기관은 CRS에는 없는 FATCA상의 5만 달러 기준금액 요건에 의존하므로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투자단체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계좌보유자 중 어떠한 인(人)도 보고의무를 발생시키는 인(人)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비보고 금융기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고의무가 없음
    - FATCA 협정에서 이러한 예외규정이 갖는 유일한 효과는 이 단체들이 FATCA에 특정된 등록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임
  - 피후원 투자단체, 피지배 외국법인 및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는 스폰서가 실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고하기 때문임
  -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보고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운용업자의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 없이도 해당 단체들이 어떠한 금융계좌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나. 금융계좌

- CRS는 금융자산에 대해 자세하게 정의하여 투자단체 및 수탁기관의 정의에 이용

하고 있는 반면, FATCA 협정에는 이러한 정의가 없음

- 그러나 CRS상 비채무성 부동산 직접투자를 제외하는 것은 FATCA의 규정과 동일함
- FATCA 협정은 개설된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투자단체의 지분을 금융계좌에서 제외함
  - 그러나 지분의 보유자가 투자단체의 장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2014년 7월 1일 이전 투자단체의 장부에 처음 등록된 지분은 제외함
  - 2014년 7월 1일 이후 이와 같은 금융단체의 장부에 처음 등록된 지분의 경우, 금융기관은 2016년 1월 1일까지 상기 제외를 적용할 의무가 없음
- CRS는 개설된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투자단체의 채무 또는 자본 지분을 금융계좌의 정의에서 제외하지 않음
  - 그러나 CRS는 금융기관을 보고대상 인의 정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투자단체의 자본 또는 채무 지분을 수탁기관이 보유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투자단체가 보고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않음

□ FATCA 협정에 현금가치 보험계약의 경우, 5만 달러의 현금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대상에서 제외하나, CRS는 이러한 제외 규정이 없음

- 현금가치에 대한 CRS와 FATCA 규정이 다르며, CRS에서의 현금가치에 대한 정의가 FATCA 규정보다는 약간 더 좁음

□ CRS와 FATCA 협정은 모두 금융기관이 기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신규로 개설하는 계좌를 기존계좌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

- CRS에서 신규계좌를 기존계좌로 취급하기 위한 요건은 FATCA 규정의 요건과 유사하나, CRS에서는 기존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요건 하나가 더 있음

□ 미환급된 초과납부로 인한 예금계좌는 CRS에서 제외계좌로 분류되며, 이는 CRS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임

- 금융기관이 고객으로 하여금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6일 내에 고객에게 환급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금계좌는 제외함

- 이와 같은 범주는 FATCA 협정의 부속서 II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FATCA 협정의 부속서 I 에서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예금계좌인 기존계좌 및 신규계좌의 검토, 식별 및 보고를 제외함
  - 또한, FATCA 협정의 부속서 I 에서는 계좌잔액 또는 가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기존 단체계좌에 대해서 가액 또는 잔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할 때까지 검토, 식별 및 보고를 제외함
  - 단, FATCA 협정의 부속서 I 에 의해 검토, 식별 및 보고가 제외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관할권에서 시행하는 규칙이 선택권을 규정하는 경우 보고 금융기관이 그 선택권과 달리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됨
- 조세회피에 이용될 위험이 낮은 제외계좌에 대해서, FATCA 협정은 양자간 논의를 통하여 합의함
  - 이 접근방식은 다자간 환경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CRS에는 다수의 일반적 범주들이 포함되고 관할권들이 조세회피에 이용될 위험이 낮은 다른 금융계좌를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함
    - 이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계좌들과 FATCA 협정 부속서 II 에 따른 보고에서 배제되는 계좌들 간 상당한 중복(overlap)이 있을 수 있음

#### 다. 보고대상 계좌

- CRS에 따르면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만 보고대상 관할권인으로 간주되며, 여기서 거주지란 주로 조세목적상 거주지를 말함
  - 단체에 대한 조세목적상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 CRS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거주자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함
  - 미국 세법상 미국 시민 또한 조세목적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FATCA 협정 역시 조세목적상의 거주성을 판단할 때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 모두 미국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 이러한 CRS상 정의는 일반적으로 보고대상 관할권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를 결정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조세목적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FATCA 협정의 접근방법은 CRS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 FATCA는 법에 근거하여 비보고대상 미국인의 범주를 구체적인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CRS는 어떤 관할권에 특정되지 않은 정의를 사용하여 비보고대상인에 관한 간단한 목록만을 포함
    - CRS상의 비보고대상인에 관한 범주는 FATCA 협정의 범주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나, 미국에 특정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FATCA 협정의 범주들이 다자적인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음
    - 그러므로 그 범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일치함
  
- CRS에 따르면,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는 그들이 수동적 비금융단체와 동일한 관할권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고대상자에 해당
  - 그러나 FATCA 협정에 따르면 수동적 해외 비금융단체(NFFE)의 미국 실질적 지배자만이 보고대상자에 해당
  - 이러한 점에서 CRS는 FATCA 협정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CRS에 따르면, 해당 단체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 여부를 불문하고 참여관할권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단체를 수동적 비금융단체에 포함하는 반면 FATCA 협정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CRS에 따르면, 둘 중 하나의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하거나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한 단체는 다른 단체의 특수관계단체에 해당함
  - 여기에서 ‘지배’는 그 단체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 또는 가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포함
    - 반면, FATCA 협정에서는 그 단체의 50%의 의결권 또는 가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할 경우 지배 테스트가 충족된 것임
  - CRS를 개발할 때, 의결권과 지분 모두 과반수를 소유하도록 하는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어느 단체를 특수관계단체로 간주함에 있어 FATCA 협정과는 상이한 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정
    - 이와 같이 CRS는 FATCA 협정과 다르나, 관할권들은 CRS와 일치하는 미국 FATCA 시행령상의 정의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CRS와 일치하도록 이를 확장할 수 있음

- 실질적 지배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CRS와 FATCA 협정 모두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을 참조하고 있음

#### 라. 실사 절차

- 실사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CRS에서는 금융기관이 신규계좌를 위한 실사 절차를 기존계좌에 적용할 수 있고 고액계좌를 위한 실사 절차를 소액계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그러나 FATCA 협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음
- FATCA 협정에 포함된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5만 달러의 기준금액을 CRS는 두지 않고 있음
  - 또한, CRS는 현금가치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에 대한 25만 달러의 기준금액도 포함하지 않음
  - 단, FATCA 협정에 따르면, CRS의 접근법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할권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규칙에 이러한 기준금액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신규계좌에 대한 실사 절차를 살펴보면, CRS의 경우에는 추정정보 검색을 신규계좌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에 의한 문서화 작업이 거의 항상 필요함
  - FATCA 협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모든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와 함께 문서화되어야 함
- FATCA 협정 부속서 I 은 계좌보유자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추정정보를 포함하나, CRS에는 이러한 추정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FATCA 협정의 추정정보는 미국 세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조세 목적상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을 포함함
- FATCA 협정은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추정정보에 미국 전화번호를 포함하나, CRS에 따르면 보고대상 관할권 내에 전화번호가 존재하고 보고 금융기관의 관할

권 내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전화번호가 추정정보임

- 우편물 보관주소 또는 의탁주소의 추정정보 간주 여부의 문제는, CRS에서는 전산 검색 결과 “우편물 보관” 또는 “의탁” 주소만 발견되고 다른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특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계좌를 자료가 없는 계좌로 보고해야 함
  - FATCA 협정에서는 기록상 유일한 주소인 “우편물 보관” 또는 “의탁” 주소는 고액계좌인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추정정보에 해당함
    - 그러나 미국 외의 “의탁” 또는 “우편물 보관” 주소는 소액계좌인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추정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본인확인서와 관련하여서, CRS에서는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서 절차의 일환으로 신규계좌 보유자의 생년월일을 입수해야 하나, FATCA 협정은 본인확인서 절차에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생년월일은 많은 관할권에서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주된 요소이기 때문에, CRS상 보고대상 정보에 해당함
  - FATCA 협정상의 본인확인서는 계좌보유자의 생년월일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CRS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상황의 변화가 있고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CRS에서는 신규 개인계좌의 경우 금융기관이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확보해야 함
  - 본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계좌보유자가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곳과 상황 변화의 결과 계좌보유자가 거주자일 수 있는 곳에 근거하여 보고해야 함
    - 다자간 협정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부분임
  - 단, 신규 단체계좌의 경우, 금융기관은 기존 단체계좌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지위를 재결정해야 함
  - FATCA 협정에 따르면, 미국 보고대상 계좌로 식별된 신규계좌에 관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금융기관은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취득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취득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미국 보고대상 계좌로 보고해야 함(양자간 협정의 특성)

-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CRS에 따르면 총잔액 또는 가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대상 계좌에 해당됨
  - FATCA 협정에서는 잔액 또는 가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기존 단체 계좌는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할 때까지 보고의무가 없음
  - CRS와 FATCA 협정은 실사에서 제외되는 기존 단체계좌의 기준금액이 같지만, 이전에 제외된 계좌가 실사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다름
  
- 통화환산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CRS에서는 관할권이 해당 국내법에 따라 통화환산을 규율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음
  - FATCA 협정은 기준금액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이 잔액 또는 가액을 결정하는 역년 이전 역년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결정된 게시 시점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 금액을 비미화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함
  
- 휴면계좌의 경우, CRS에서는 제외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고의무가 없으나, FATCA 협정에서는 다른 여타의 계좌와 마찬가지로 검토, 식별 및 보고됨
  - 관할권은 CRS에 따라 휴면계좌를 제외계좌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CRS와 FATCA 협정의 목적상 휴면계좌를 다른 여타의 계좌와 마찬가지로 문서화하고 보고할 수 있음
  
- 실사 절차를 통하여 계좌보유자가 이중 또는 다중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 CRS의 다자간 맥락으로 인하여 계좌보유자의 조세목적상 거주지로 밝혀진 모든 관할권에서 정보가 교환됨
  - 그러나 FATCA 협정은 양자간 법률문서에 해당하므로, 미국과 FATCA 협력 관할권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중 또는 다중 거주지에 관해서는 고려되지 않음
  
- 평균 월별 잔액의 보고에 대해서, CRS는 관할권에 해당 역년 말의 잔액 또는 가액 대신에 보고대상 계좌의 평균 잔액 또는 가액을 보고할 수 있는 보고 기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고하도록 허용함
  - 그러나 FATCA 협정에서는 양자간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양자간 협상 결과 이와 같은 보고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관할권은 CRS 목적에 맞추어

평균 잔액 또는 가액을 보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서는 CRS와 FATCA 협정 모두 세법을 포함한 관할권의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되도록 제한하고 있음
  - CRS는 피지배 외국기업에 의한 상품헤징거래를 수동적 소득의 정의에서 명확히 제외하지 않고 있음
  - 또한, CRS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할권의 수동적 소득 정의가 주식에 기재된 목록과 일치할 것을 요구함
  
- CRS는 증빙서류가 5년간 유효함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FATCA 협정은 증빙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CRS에 따른 증빙서류 유효기간의 일반 원칙은 CRS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예외를 규정하며, 이는 일반 원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의미함
  
- CRS와 FATCA 협정은 모두 후속 역년의 마지막 날 현재 고액계좌가 된 기존 개인계좌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간 내에 강화된 검토를 완료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FATCA 협정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함
  - CRS에서도 FATCA 협정과의 일관성을 위해 6개월 이내에 강화된 검토를 이행하도록 요건을 채택할 수 있음

#### 마. 보고대상 정보

- CRS에 따르면, 보고대상 정보 중 보고대상 인의 생년월일 및 출생지는 보고해야 함
  - 그러나 FATCA 협정에서는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계좌에 대하여 생년월일을 보고할 것을 요구함
  - FATCA 협정에는 2017년 1월 1일자로 2017년과 후속연도에 관하여 보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음
    - 납세자번호는 모든 신규계좌에 대하여 요구되며, FATCA 협정은 출생지에 대한 정보 보고는 요구하지 않음
  
- CRS에서는 기존 계좌에 대한 납세자번호가 보고 금융기관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법에 의하여 보고 금융기관이 수집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해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FATCA 협정에 따르면, 기존계좌에 대해 가용한 납세자번호가 없다면, 금융기관의 기록에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함
  - 합리적인 노력은 요구되지 않지만, 모든 신규계좌에 대하여 수집 및 보고되어야 하는 2017년부터 납세자번호에 기존계좌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보고 및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 약정이 있음

□ 보고 기간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 FATCA 협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계좌 해지 전에 즉시 계좌 잔액을 보고해야 함

- 그러나 CRS에서는 계좌가 해지된 사실만 보고하면 됨

〈표 Ⅲ-7〉 CRS와 FATCA 협정 비교

구 분		CRS	FATCA 협정
보고대상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보험회사</li> <li>* 제외대상 :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ul>
보고대상 계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계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미국) 5만 달러 초과 기존계좌(보험·연금은 25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초과 신규예금·보험계좌(기타계좌는 한도없음)</li> <li>(미국→한국) 연간이자가 10달러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원천 소득과 관련된 기타 모든 금융계좌</li> </ul>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만 달러 초과 계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미국) 25만 달러 초과 계좌</li> <li>(미국→한국)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금융계좌</li> </ul>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계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미국) 모든 계좌</li> <li>(미국→한국)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금융계좌</li> </ul>
보고대상 금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좌보유자명, 주소, 납세자번호, 출생자생년월일</li> <li>계좌번호, 계좌 잔액 또는 가액</li> <li>금융기관의 이름, 식별번호</li> <li>(수탁계좌) 이자배당 등 발생소득, 관련자산의 매각·상환으로 발생한 총 거래 가액</li> <li>(예금계좌) 지급이자</li> <li>(그 밖의 계좌)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li> </ul>	<p>〈한국→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 * 계좌보유자의 출생자출생일 제외</li> </ul> <p>〈미국→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좌보유자명, 주소, 납세자번호</li> <li>계좌번호</li> <li>금융기관의 이름, 식별번호</li> <li>해당계좌로 지급되는 모든 미국원천 소득금액</li> </ul>
정보교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도 9월까지 전년도 말 정보를 상호교환(최초 정보교환 : 2017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최초 정보교환 : 2016년)</li> </ul>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IV

결론

- 2015년 말 현재, 조세정보자동교환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동 정보교환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정보교환의 표준이 되는 공통보고기준(CRS)에 대한 실무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2014년 OECD가 발표한 CRS를 실행하기 위해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참여함
  - 정보교환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실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정보교환을 개시할 예정임
  
- 이러한 시기에 CRS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CRS가 등장하는 토양을 마련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의 국가간 협정(IGA)을 서로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함
  
- FATCA IGA나 CRS는 모두 금융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항목별로 어떠한 정보가 보고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보고대상이 되는 계좌, 금융정보, 금융기관 등의 범위와 그 식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FATCA IGA와 CRS 공히 해외 금융계좌를 통한 국제 조세회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노력의 일환이기에 CRS는 각국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짐
  - 두 규정 간의 차이가 많을수록 양쪽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이행비용은 증가하게 되며, 각국은 두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동기를 부여받기 어려워짐
    - 이는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따라서 CRS는 각국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FATCA와 유사하게 설계하여 FATCA와의 일관성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 두 제도간에는 유사점이 존재함
- FATCA 이후에 만들어진 CRS는 FATCA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규정상 항목들 내에 선택사항을 두어 FATCA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반면, FATCA는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양자간 협정에 의해 적용되지만 CRS는 여러 나라들이 다자간 정보교환을 이루기 위해 참여하는 협정의 기준이기에 형식상 차이가 존재함
- 양자간 협정과 다자간 협정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정보교환을 이행할 당사국들이 양자냐 다자냐에 따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됨
    - 예를 들어, CRS에서는 계좌보유자가 이중 또는 다중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 조세목적상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관할권에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하나, FATCA는 두 나라 간의 문제만을 고려하므로 복수의 거주지 여부가 양국간 정보 교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
- 본 보고서는 CRS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FATCA 협정과 CRS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설명함으로써 CRS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참고문헌

홍범교,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기획재정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보도자료, 2015. 6. 10.

HM Treasury,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 2014.

OECD, “Declaration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Adopted on 6 May 2014,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_\_\_\_\_,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in Tax Matters,” OECD Publishing, 2014.

\_\_\_\_\_,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in Tax Matters The CRS Implementation Handbook,” August 7, 2015.

### 〈웹사이트〉

[http://www.oecd.org/ctp/exchange-of-tax-information/taxtransparency\\_G8report.pdf](http://www.oecd.org/ctp/exchange-of-tax-information/taxtransparency_G8report.pdf)

<http://www.oecd.org/ctp/exchange-of-tax-information/automatic-exchange-financial-account-information-common-reporting-standard.pdf>